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18 선고 2018가단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8. 9.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17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이기선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17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래의 등기관자인 망 D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만큼만 말소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